의안번호	2201138
의 뢰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4. 7. 18.
추계번호	24C1516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	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'국가' 외에 '지방자치단체'를 추가함	임의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(안 제7조의3)

○ 현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여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임

[표 1]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현황

구분	내용
설립	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
업무	디지털성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365일 상담,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, 수사·법률·의료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
실적	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2022년 234,560건, 2023년 275,520건
예산	2024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1,228백만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185백만원

자료: 여성가족부

○ 또한,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및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자체 지원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

[표 2]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 운영 현황

구분	내용
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	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 상담, 수사 조력, 법률·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,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피해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- 경남, 경북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세종, 울산, 인천, 전남, 전북, 제주, 충남, 충북(가나다 순) 설치
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자체 지원기관	-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 - 서울, 인천, 경기, 부산 설치

자료: 여성가족부

○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원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다만,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하거나 신설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